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미생물 규격 적용 협조요청

1.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5. 6. 5) (1)에서 두부류 또는 묵류의 대장균군 규격 적용은 '충전,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.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3. 위 2에 따라 대장균군 규격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'충전, 밀봉한 제품'은 포장재 내부를 주내용물로 메워서 채우거나 정제수, 조미액 등을 넣어 메워서 채운 제품이 이에 해당하며, 아래 예시와 같이 단순히 넣어 밀봉한 제품은 위 규격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예시

- ① 즉석 제조한 판두부를 씰링기로 단순 포장한 제품 → 적용대상 제외
- ② 절단, 유통처리한 유부를 단순 밀봉한 제품 → 적용대상 제외
- ③ 포두부를 제조, 성형하여 단순 밀봉한 제품 → 적용대상 제외

끝.

식품기준과장

관인생략

수신자 시험검사정책과장, 식품관리총괄과장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

보건연구사

이한솔

연구관

전결 2025. 11. 28.

안현주

협조자

시행 식품기준과-10656

(2025. 11. 28.)

접수 시험검사정책과-8363

(2025. 11. 28.)

우 28159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448

팩스번호 043-719-2400

/ 21sol21@korea.kr

/ 비공개(5)